

행 정 자 치 부

주 의 요 구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화천군, 양양군

내 용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 자목 및 과목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조리사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식생활개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유흥주점영업자는 종업원(유흥접객원만 해당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이직일, 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 명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101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 및 유흥주점영업자가 상기 의무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강원도 화천군, 양양군은 아래 [표]와 같이 감사 대상기간인 2012. 10.부터 2016. 9.까지 영업허가증 미보관 및 종업원 명부 기록·관리 등의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4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른 과태료(30만원)를 부과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행정처분(시정명령)을 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부적정 현황

처분 기관	업소명	소재지	영업 종류	위반사항	실제처분 (처분일)	처분 기준
화천군	○○○ 유흥주점	화천군 ○○면 ○○로 00	유흥 주점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영업허가증 영업소 내 미보관	시정명령 (2013.4.29.)	과태료 30만원
	○○○ 유흥주점	화천군 ○○면 ○○로 00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종업원명부 미기재	시정명령 (2013.4.29.)	
	○○○ 유흥주점	화천군 ○○로 0길 00-00			시정명령 (2013.4.29.)	
양양군	○○○ 유흥주점	양양군 ○○로 0길 00			시정명령 (2013.7.1.)	

조치할 사항 화천군수, 양양군수는

앞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과 다르게 행정처분(시정명령)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